

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수영강사 채용 공고

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7월 18일

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TFT

1 모집개요

근무지	분야	채용인원	담당업무	채용형태	비고
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	수영강사	00명	수영장 프로그램 지도및 관리	계약직	<근로기간>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. 12. 31. 까지 *계약일은 채용 시점에 따라 상이함

※ 근로기간은 근로자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

2 근로조건

분야	근무시간	보수	
		급여	비고
수영강사 (00명)	주 5일(월~금) 06:00~21:00 (시간 내 협의·조정)	2,940천원 (기본급, 급식비 포함) ※선임지도자 1명 직책수당 추가	- 4대보험 포함 - 초과수당, 명절수당, 연가보상비 별도 - 수당 세부 기준은 내부 운영규정에 따름

※ 근무시간은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
3 응시자격사항
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영동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(인사규정) 제3장 제27조」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*별첨 참조 -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- 병역필 또는 면제자 -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결격사유가 없는 자 -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필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[선임강사 해당]생활체육지도사(수영) 자격증 - 민간지도자 자격증, 생존수영강사 등 수영관련 자격증 소지자
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교사 2급(체육) - 선수출신 - 영동군 및 인근지역 거주자

4 채용계획

○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

- 공고기간: 2025. 7. 18.(금) ~ 채용완료 시까지 상시 공고
- 접수기간: 상시 접수(단, 채용 완료 시 조기 마감 가능)
- 접수처: 충북 영동군·읍 영동황간로123 문화체육센터 1층 총무부(방문 및 등기)
- 제출서류

구분	서류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시원서 · 이력서 · 자격증사본 · 자기소개서 · 개인정보수집 동의서
선택 (해당자에 한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력증명서

○ 일 정

구분	일정	비고	
서류심사	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	지원서 접수 후 1~3일 이내	개별 통보
면접심사		필요 시 면접심사를 거치며 면접심사 진행 시 일정은 개별통보	
최종 합격자 발표		서류합격자 통보 후 2~3일 이내	

※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최종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, 징계사실유무확인서(징계정보시스템), 증명사진 1부 제출

5**유의사항**

-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채용 인원은 기준·절차 등에 따라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,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,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기타 사항은 국민체육센터TFT 채용담당자(☎043-740-388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제27조[결격사유]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 1.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 2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 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10.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

<별지 제1호 서식>

응시원서

본인은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강사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. 아래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일 허위사실이 발견 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5년 월 일

응시자

(서명날인)

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TFT 귀하

※접수번호		지원분야		근무희망시간	
성명			생년월일		
현주소					
연락처	H.P				
	E-mail				

----- (인) -----

응시표

※접수번호		지원분야		근무희망시간	
성명			생년월일		
현주소					
<p>2025년 월 일</p> <p>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</p>					

※ 일자 는 서류 제출일로 기재

[이 력 서]

성 명	(한글)	집 전 화			
	(한자)	핸 드 폰			
생년월일	년 월 일 (만 세)	이 메 일			
현 주소					
병 역	필() 면제() 미필()	복무기간		면제사유	

경 력 사 항	기 간	직장명	직 위	직 무	비 고
	-				
	-				
	-				
	-				
	-				

자 격 사 항	자격종류	자격증번호	발급기관명	취득일자
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일 : 2025년 월 일

작성자 : (인)

※ 경력사항 증명서(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), 취득 자격증의 사본 반드시 첨부

자 기 소 개 서

◎ 성장과정
◎ 자기 PR
◎ 지원동기
◎ 입사 후 포부

※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,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작성

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

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는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-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

□ 개인정보 수집항목

- 수집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학력·경력·자격사항 등
-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

□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-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, 이용, 보관

□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

-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 원서 접수가 불가합니다.

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-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다만,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비위사실조회를 위해 관련 부서(기관)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☞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(), 동의하지 않음()

☞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 처리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(), 동의하지 않음()

☞ 최종합격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(), 동의하지 않음()

2025년 월 일

본 인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 년 월 일

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TFT 귀중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TFT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